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 용 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도모,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주민생활개선,
기존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통해 교류창구 유지,
신뢰기반조성 기여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과
인도적인 지원인 기근, 질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